

## 소방장비관리법안

(유재중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436
----------	------

발의연월일 : 2017. 3. 28.

발의자 : 유재중 · 윤재옥 · 김정우

최연혜 · 소병훈 · 배덕광

이철규 · 김상훈 · 김규환

박맹우 의원(10인)

### 제안이유

최근 재난 양상의 다양화와 그 규모의 대형화, 위험물·유해화학물 확대로 인한 특수재난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재난 대처에 있어 소방장비에 대한 의존도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의 소방장비의 성능·품질의 확보와 보유 장비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하겠음.

그런데 현재 소방장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소방장비 관리 규칙」은 총리령으로서 국가적 차원의 소방장비의 인증제도 도입이나, 검사와 정비를 위한 전문기관 지정 등을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음. 아울러 소방장비는 취득과 유지관리 방법 등에 있어 일반 물품과 달리 취급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으나 「소방장비 관리 규칙」은 현행 「물품관리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내용을 벗어날 수 없으므로 그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문제도

있음.

이에 「소방장비관리법」을 제정하여 소방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소방장비관리위원회의 설치, 소방장비에 대한 국가인증제도 도입 등 소방장비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소방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소방장비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방서비스 질의 개선 및 국민안전의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민안전처장관은 소방장비관리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기본법」 제6조에 따른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에 따라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고,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소방장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의 소방환경 특성을 고려한 소방장비관리를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시·도 소방장비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고, 시·도 관리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시·도 소방장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소방장비관리에 관한 인증대상 소방장비의 지정 및 변경, 인증대

상 소방장비의 시험 및 인증을 위한 기준의 제정·개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 소속으로 소방장비관리위원회를 둠(안 제6조).

마. 소방기관에서만 사용하거나 특수한 성능이 요구되는 소방장비는 국민안전처장관이 표준규격을 정하도록 하되,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표준규격의 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단서 및 제5항).

바. 안전하고 성능이 우수한 소방장비의 확충과 소방장비의 품질 개선 등을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여금 소방장비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기관에서는 인증을 받은 소방장비를 구매하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20조).

사. 소방기관의 장은 구매하려는 소방장비의 특수성·품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규격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3항).

아. 소방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구매 절차의 편리성 및 구매의 효율성, 구매하려는 소방장비의 특수성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소방장비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자. 소방장비는 조달청장이 정한 내용연수를 따르되, 조달청장이 내용연수를 정하지 아니하거나 조달청장이 정한 내용연수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 내용연수가 다를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 내용연수에 따르도록 하고, 내용연수가 경과하여도 사용할 수 있는 소방장비는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 차. 소방장비운용자는 소방장비 운용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 및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도록 함(안 제32조).
- 카. 국민안전처장관 및 시·도지사는 소방회전익항공기의 긴급대응체계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제시스템의 공동활용 등 협력체제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34조제1항).
- 타. 국민안전처장관은 전문인력과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소방장비정비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센터는 소방장비의 검사·점검 및 정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38조).

## 소방장비 관리 법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소방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소방장비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방서비스 질의 개선 및 국민안전의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장비”란 소방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동장비·화재진압장비·구조장비·구급장비·보호장비·정보통신장비·측정장비 및 보조장비를 말한다.
2. “소방업무”란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3. “소방기관”이란 중앙소방학교·중앙119구조본부·소방본부·소방서·지방소방학교·119안전센터·119구조대·119구급대·119구조구급센터·항공구조구급대·소방정대·119지역대 및 소방체험관 등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관리”란 소방장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소방장비의 구매를 위한 기획에서부터 불용(不用)의 결정과 폐기·양도까지 전 주기에 걸쳐 언제든지 본래의 성능을 발휘하도록 하

는 점검·정비 및 그 밖의 모든 행위를 말한다.

5. “운용”이란 소방장비를 그 기능 및 목적에 맞도록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6. “내용연수”(耐用年數)란 소방장비의 운용에 지장이 없는 상태에서 소방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한 소방장비의 경제적 사용연수를 말한다.

7. “소방장비운용자”란 소방장비를 직접 운용하는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및 의용소방대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소방장비의 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 제2장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소방장비관리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기본법」 제6조에 따른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에 따라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방장비관리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
2. 소방장비관리를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
3. 소방장비의 관리 및 운용과 관련된 추진계획
4. 소방장비의 기술혁신 및 실용화 추진에 관한 사항

5. 소방장비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재원확보

6. 그 밖에 소방장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소방장비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민안전처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다음 각 호의 계획과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화재안전,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3에 따른 화재안전정책 기본계획

2.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소방산업진흥 기본계획

3.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구조·구급 기본계획

⑤ 국민안전처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제6조에 따른 소방장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시·도 소방장비관리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소방환경 특성을 고려한 소방장비관리를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시·도 소방

장비관리계획(이하 “시·도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도별 소방장비관리 목표

2. 시·도별 소방장비현황 및 소방환경분석

3. 시·도별 소방장비의 관리 및 운용과 관련된 사항

4. 시·도 간 소방장비의 공동사용 및 협력

5. 소방장비의 조달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 확보

6. 그 밖에 시·도별 소방장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도지사는 시·도 관리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시·도 소방장비관리 시행계획(이하 “시·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전년도 시·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해당 연도 시·도 시행계획을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도 관리계획과 시·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소방장비관리위원회) ① 소방장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 소속으로 소방장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제5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2. 제13조에 따른 인증대상 소방장비의 지정 및 변경

3. 제13조에 따른 인증대상 소방장비의 시험 및 인증을 위한 기준의 제정·개정 등에 관한 사항

4. 이 법에 위반된 소방장비의 처분·조치 등과 관련하여 국민안전처장 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5. 소방장비의 성능 및 안전성조사

6. 소방장비 사고에 대한 종합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

7.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

8. 그 밖에 소방장비 관리와 관련된 중요 정책사항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중앙소방본부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국민안전처에서 소방장비 관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중 국민안전처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 중앙행정기관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물품관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중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3. 시·도에서 소방장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중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

4.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에서 소방장비관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

는 소속 직원 중 기술원의 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5. 그 밖에 소방장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소방장비의 시험, 인증기준, 표준규격의 제정·개정, 구매 및 조사 등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효율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소방장비관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전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한다. 이 경우 전문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⑥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소방장비관리를 위한 재원의 확충) 국민안전처장관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시행계획, 시·도 관리계획 및 시·도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소방장비관리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소방기관의 장, 소방장비 제조자·수입자 또는 소방장비관리와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에 관하여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 제3장 소방장비의 분류와 표준화

제9조(분류)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소방장비를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소방장비를 용도 및 기능 등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② 소방장비의 분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소방장비의 목록화) ① 소방기관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하고 있거나 취득하려는 소방장비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품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물품을 목록화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 목록화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의 요청에 따라 소방장비의 목록화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소방장비의 표준화) ① 소방장비의 표준이 되는 규격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거나 국내외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정한 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표준에 따른다. 다만, 소방기관에서만 사용하거나 소방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특수한 성능이 요구되는 소방장비의 표준규격(이하 “표준규격”이라 한다)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표준규격을 정하여야 할 소방장비의 종류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표준규격을 제정·개정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  
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국민안전처장관은 표준규격을 제정·개정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규격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⑤ 국민안전처장관은 소방장비의 표준에 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고  
려하여 지정한 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 단서에 따른 표준규격의 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안전처장관은  
표준규격의 제정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소방장비의 표준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소방장비의 도장 및 표지) ① 소방장비의 도장(塗裝) 및 표지(標  
識)에 관하여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다만, 국민안전처장관이 정  
하지 아니한 소방장비의 도장 및 표지에 관하여는 시·도지사가 정한  
다.

② 소방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는 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의  
도장 및 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도장 및 표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장 소방장비의 인증 등

제13조(소방장비의 인증)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품질이 우수한 소방장비

를 확충하고 소방장비의 품질을 혁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장비(이하 “인증대상 소방장비”라 한다)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인증을 받으려는 소방장비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소방장비 인증의 기준·절차·방법·유효기간 및 그 밖에 소방장비 인증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소방장비 인증의 취소) ①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을 받은 소방장비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장비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장비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방장비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취소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민안전처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소방장비 인증에 필요한 인력,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소방장비 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

민안전처장관에게 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신청할 수 없다.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인증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인증기관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한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⑤ 국민안전처장관은 인증기관에 대하여 소방장비의 성능 및 안전성의 확보에 필요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감독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국민안전처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실수·누락 등으로 인하여 인증의 공신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장비 인증의 신청을 거부한 경우
6. 인증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7.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⑦ 국민안전처장관은 제6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정지를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⑧ 인증기관 지정의 기준·절차 및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동등성 인정) 국민안전처장관은 인증대상 소방장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에 따른 인증과 동등성을 인정할 수 있다.

1.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2. 인증기관이 인정한 외국의 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제17조(인증의 표시 등) ① 제13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소방장비(이하 “인증소방장비”라 한다)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소방장비 또는 포장에 인증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3조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 한 소방장비 또는 포장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인증소방장비의 제조자, 판매자 및 사용자는 인증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과징금)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5조제6항 각 호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의 정지가 해당 업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 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제5장 소방장비의 구매 등

제19조(소방장비의 구매) ①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의 구매를 위하여 소방장비 구매 입찰공고, 견적서 제출 요청 또는 계약체결을 할 때에는 계약자, 납품업자 또는 생산자 등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매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 받아야 한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소방장비를 구매하여야 한다.

1. 소방장비 보유기준 및 내용연수
2. 물품분류번호·품명·규격·수량 및 장비가 필요한 시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장비를 구매한 경우 외에 소방장비를 취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방장비를 관리하는 공무원(이

하 “소방장비관리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취득한 소방장비의 품명·규격·수량·취득경위 등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소방장비의 구매 제한) 소방기관의 장은 인증대상 소방장비를 구매하려는 때에는 인증소방장비 또는 제1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보는 소방장비를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방장비에 맞는 인증기준이 없는 경우
2. 인증기준을 새로운 소방장비에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인정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21조(소방장비의 규격 및 특정규격 등) ①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를 구매하려는 경우 구매하려는 소방장비의 품명·품목 및 규격을 정하여야 한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구매하려는 소방장비의 품명·품목 및 규격을 정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소방장비 제조자·수입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장비의 특수성 및 품질 등을 고려하여 소방장비의 특정규격을 정할 수 있다.

④ 소방장비 규격 및 특정규격 등의 결정 절차·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소방장비 선정 요청 등) ① 소방기관의 장은 구매하려는 소방장

비의 특성 및 구매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구매하려는 소방장비의 선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방장비의 선정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소방장비를 선정할 수 있다.

1. 구매 절차의 편리성 및 구매의 효율성
2. 구매하려는 소방장비의 특수성 및 전문성
3. 소방장비의 표준화 및 기술개발 촉진

③ 소방장비의 선정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소방장비의 검사 및 검수) ①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를 구매할 때에는 해당 소방장비의 품질·물성(物性)·외관(外觀)·치수·수량 및 성능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 소방장비를 검사 및 검수하여야 한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검수를 하는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검사반을 편성하여 검사하거나 검수하게 할 수 있다.

③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장비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는 소방장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검사 등을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24조(소방장비관리 공무원의 의무) ① 소방기관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소방장비를 「자동차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항공안전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소방장비관리 공무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소방장비를 항상 사용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③ 소방장비관리 공무원은 자신이 관리하는 소방장비를 소속 소방기관의 장으로부터 양수(讓受)할 수 없다.

제25조(소방장비의 보유기준 등) ① 소방기관의 장은 「물품관리법」 제16조에 따른 정수책정기준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8조에 따른 물품관리기준에도 불구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소방장비의 보유기준에 따라 소방장비를 관리할 수 있다.

- ② 소방기관의 장은 신규로 채용한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방화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보호장비(이하 “개인보호장비”라 한다)를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채용 이전에 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보호장비를 미리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소방장비의 관리전환 및 반납) ① 소방기관의 장은 동일한 시·도의 다른 소방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방장비를 조회하여 동일한 시·도의 소방기관으로 해당 소방장비를 관리전환할 수 있다.

- ② 소방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25조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개인보호장비를 가져갈 수 있다. 이 경우

개인보호장비의 이전은 「물품관리법」 제35조·제38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5조·제78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후 양여하는 절차에 따른다.

1. 「소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가소방공무원과 지방소방공무원 간에 인사교류를 하는 경우

2.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시·도 상호 간에 지방소방공무원의 인사교류를 하는 경우

제27조(소방장비의 재고관리) ① 소방기관의 장은 사용빈도가 높거나 재고(在庫)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장비에 대하여는 재고를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재고관리기준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 재고관리기준을 정하는 경우에 소방장비의 예측수요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28조(소방장비의 관리기록) ① 소방기관의 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소방장비의 현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방장비의 현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산으로 입력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를 기록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9조(소방장비의 내용연수) ① 소방장비의 내용연수는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한다. 다만, 조달청장이 내

용연수를 정하지 아니하거나 조달청장이 정한 내용연수와 국민안전처 장관이 정한 내용연수가 다를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 내용연수에 따른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내용연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소방장비를 취득한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내용연수의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소방기관의 장은 내용연수가 경과하여도 사용할 수 있는 소방장비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연장을 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제30조(망실·훼손된 소방장비의 처리) ① 소방기관의 장은 제27조에 따른 소방장비의 재고관리 결과 소방장비가 없어지거나 소방장비가 훼손(毀損)된 것을 발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변상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업무와 관련된 상당한 사유로 발생하는 소방장비의 훼손에 대하여는 변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장 소방장비의 운용 등

제31조(소방장비의 운용) ①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운용자로 하여금 소방장비를 그 기능 및 용도에 맞게 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방장비의 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
2. 「소방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
3. 「소방기본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4. 「소방기본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생활안전활동
5. 「소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소방교육 및 소방훈련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소방장비의 운용 및 운용제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소방장비운용자의 교육·훈련 등) ① 국민안전처장관 및 시·도지사는 소방장비의 효율적 운용과 운용자의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장비운용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② 소방장비운용자는 소방장비 운용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 및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③ 국민안전처장관 및 시·도지사는 소방장비운용자의 전문성과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 및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

우 국민안전처장관 및 시·도지사는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소방장비운용자의 육성과 능력향상에 관한 사항, 교육·훈련의 내용 및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소방장비의 보관) ①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를 소방기관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기관의 장이 소방장비를 소방기관에 보관하는 것이 소방장비의 사용이나 유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소방기관 외의 시설에 보관할 수 있다.

③ 소방기관의 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장비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보관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34조(소방회전익항공기의 운영 협력 등) ① 국민안전처장관 및 시·도지사는 소방회전익항공기의 긴급대응체계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제 시스템의 공동활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협력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국민안전처장관 및 시·도지사는 소방회전익항공기의 긴급출동 및 공동대응 능력 향상을 위하여 상호 협의에 따라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지역 소방업무 수행에 국민안전처 또는 다른 시·도의 소방회전익항공기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지원

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국민안전처장관은 지원에 적합한 시·도지사에게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제8장 소방장비의 점검 및 정비

제35조(소방장비의 점검 등) ① 소방기관의 장은 소관 소방장비를 점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자동차 등의 소방장비에 대하여는 점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는 소방장비 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소방장비의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고장 등의 발생 보고 및 조사) ① 소방장비관리 공무원은 소방장비의 고장이 발생하였거나 불량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장비의 고장발생 등에 관하여 소방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소방장비관리 공무원은 소방장비 운용 중에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소방장비 사고를 보고받은 소방기관의 장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국민안전처장관은 제3항에 따라 소방기관의 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사고에 대하여 사고원인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안전처장관은 소속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조사단을 구성·운영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소방장비의 정비) ①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에 고장이 발생하였거나 불량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소방장비를 정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기관의 장은 제38조에 따른 소방장비정비센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전문 정비업체 등에 의뢰하여 정비할 수 있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정비가 완료된 소방장비가 적정하게 정비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38조(소방장비정비센터의 지정 등)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소방장비의 체계적·전문적·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소방장비정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소방장비의 검사

2. 소방장비의 점검 및 정비

3. 소방장비의 검사·점검 및 정비 등에 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

## 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4. 그 밖에 센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센터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그 업무를 하지 아니한 때
3.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4. 지원받은 자금을 지원목적 외에 사용한 때

⑤ 센터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장 소방장비의 처분

제39조(소방장비의 반납) ①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의 운용 필요성 및 가능성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에 근거하여 소방장비운용자의 소방장비 반납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0조(소방장비의 불용 결정 등) ①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장비에 대하여는 불용 결정을 할 수 있다.

1. 내용연수를 경과한 소방장비

2. 사용할 수 없는 소방장비

3. 사용할 필요가 없는 소방장비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장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태 및 내용연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용 여부 및 적정 교체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소방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41조(소방장비의 폐기) ① 소방기관의 장은 불용 결정된 소방장비가 사용될 경우 안전사고 등의 위험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체·절단 등의 방법으로 불용 결정된 소방장비를 폐기하여야 한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 저장매체가 내장된 소방장비를 불용 결정 후 폐기하는 경우에는 저장자료의 삭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10장 보칙

제42조(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① 국민안전처장관 및 시·도

지사는 소방기관이 사용하는 소방장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소방장비의 취득부터 불용 결정 후 처분까지 그 이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이하 “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국민안전처장관 및 시·도지사는 구축된 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소방장비 정보의 입력 등을 통하여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국민안전처장관 및 시·도지사는 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이 국민안전처와 다른 시·도 간에 연계되도록 할 수 있다.

제43조(피해보상을 위한 보험의 가입 등) ① 국민안전처장관 및 시·도지사는 소방장비의 공무상 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을 담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는 등 소방장비로 인한 피해와 관련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피해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장비의 특성에 적합한 손해보험상품(「보험업법」 제2조제1호나 목의 손해보험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선정할 수 있다.

③ 소방장비 손해보험상품의 선정에 관한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수수료) 국민안전처장관, 시·도지사 또는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1. 제23조제3항에 따른 소방장비의 검사 및 검수
2. 제32조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
3. 제35조제2항에 따른 점검

제45조(청문) 국민안전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2. 제15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및 인증업무의 정지
3. 제38조제4항에 따른 센터 지정의 취소 및 업무의 정지

제46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 이 법에 따른 국민안전처장관 및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소방본부장 및 소방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소방기관의 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기술원
2. 센터
3.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제47조(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제15조에 따라 소방장비의 인증업무에 종사하는 인증기관의 임원·

직원

3. 제46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의 임원·직원

## 제11장 별칙

제48조(별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인증업무를 한 자

3.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을 한 자

4.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5.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자

제49조(과태료) ①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장 및 표지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도장 및 표지를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

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총리령으로”를 “따로 법률에서”로 한다.